

#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956호  
2024. 5. 10.

- | 도심개발 활성화 관련 서울시 제도 개선 동향과 의미
-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 3년, 향후 개선과제 산적
- | 건설산업 사회공헌사업, 국민과의 교감 확대 필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 도심개발 활성화 관련 서울시 제도 개선 동향과 의미

- 밀도와 공공기여 운용의 융통성 부여, 방향성 측면에서 큰 의미 -

## ■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 대책

-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으며(3.27), 여기에는 사업성 개선(5종)과 공공지원 강화(5종) 등 총 10가지 대책이 포함됨.
  - 주목할 부분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업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밀도와 공공기여에 대하여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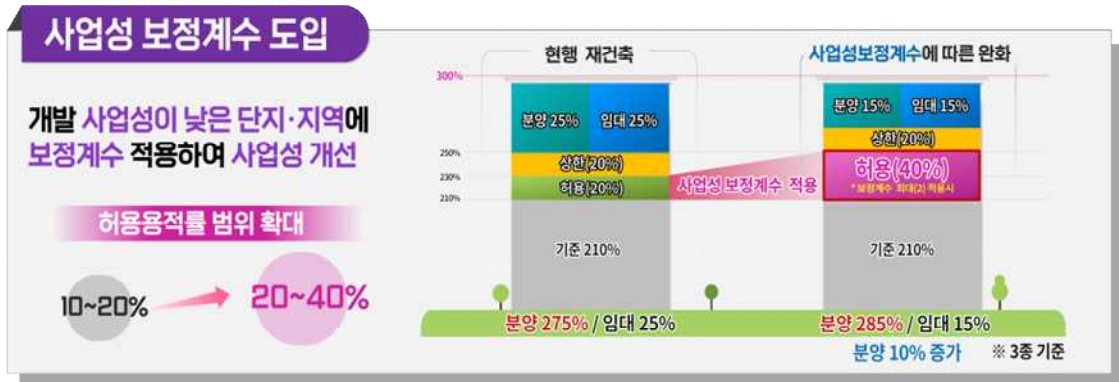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자료 : 서울시 보도자료, 2024.3.27.

-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여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적용하여,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함.
  -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임.
  - 예를 들어,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보정계수 2를 적용하면 허용용적률이 40%로 상승되며 이에 따라 분양주택이 증가함.

<그림 2> 서울시 사업성 보정계수 개념



자료 : 서울시 보도자료, 2024.3.27.

-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건축되어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하는 지역은 ‘현황용적률1)’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 용적률도 부여함.
  - 실제 서울 시내 많은 노후 단지가 종 세분화 전 높은 용적률로 건축되어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음.
- 공공기여 부담을 낮춰 사업성을 개선함.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공공기여 부담을 줄이고,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부여함.
  - 1종 → 2종, 3종 → 준주거로 상향 시 당초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낮춤.
  -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필요시설 또는 전략육성시설에 한해 상한용적률 산식2)의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으로 올려 공공기여를 더 많이 인정함.
- 고도·경관지구의 높이 규제를 완화하여 산자락 저층 주거지의 정비사업 사업성을 제고함.
  -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하로 완화함.

### ■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후 도심개발 전반에 적용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함(4. 19).
  -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울 시가화(녹지지역 제외) 면적의 35%에 적용되며,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의 수단으로 운영됨.
  - 하지만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도심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계속됨.

1) 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되어 있는 용적률.

2) 상한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 × (1+1.3×가중치×a토지+0.7×a건축물·현금).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이 폐지되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함.
  -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 대비 100~300%p 낮게 설정 후, 공개공지, 건축한계선, 공동개발 등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함.
  - 앞으로 기준용적률 하향을 없애고, 기준용적률이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됨.

<표 1> 서울시 용적률 계획기준 개선(안)

구 분	개정항목	변경내용		
		기정	변경	
허 용 용적률	항목	1. 획지계획 2. 대지내 공지 3. 건축물용도 4. 건축물 형태 및 색채 5. 보행 및 가로 경관개선 6. 주차계획 7. 건축물 개발 8. 지역(역사)자산보전 9. 친환경 10. 지능형건축물	1. 스마트도시(로봇친화형건축물, UAM 등) 2. 탄소중립(지열, 저영향개발 등) 3. 디자인 혁신(지역특화디자인 등) 4. 녹지생태도시(입체녹지, 공공보행통로 등) 5. 지역 맞춤형계획(전선지중화 등)  ※ 계획적 필요시 당연 이행 항목(공동개발, 지정용도, 건축한계선 등)은 기준 용적률반영	
	최대 완화범위	조례용적률 이하	조례용적률의 1.1배 이하	
기 준 용적률	용도 지역 유지 시	준주거	300%	400%
		근상	400~500%	600%
		일상	500~600%	800%
		중상	600~700%	1,000%

자료 : 서울시 보도자료, 2024.3.27.

-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 도시공간 수요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됨.
  - 기존 인센티브 항목인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공동개발 등 일반적 항목(10개 분야, 38개 항목)으로는 미래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 로봇 친화형 건물UAM 시설 등 미래산업 용도를 도입하거나, 탄소중립·녹지생태도시 등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용적률 제도를 전환
- 용적률 산정기준을 2000년으로 통일하여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해 온 용적률 체계를 통합함.

## ■ 사업성과 공공성의 조화는 향후 도시정비의 관건, 새로운 패러다임 고민 필요

- 기존 도심 정비를 통한 주택공급,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과 도심 복합개발을 통한 도시 활력 증진과 경쟁력 확보 등은 시대적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하지만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변수가 존재하여 사업추진이 용이하지 않고, 그 개발사업의 결과로 나타난 도시공간의 변화도 주로 고가주택의 공급 위주로 다양한 미래 도시공간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도 존재함.
- 도심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조화가 필수적이거나, 과거 서울을 중심으로 대도시들의 급격한 성장과 개발을 거치면서 두 주체 간 도심 개발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발생함.
  - 공공은 도심 개발사업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크다는 기본적 관점에서 사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줄여서 공공의 복리 증진에 활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함. 즉, 밀도 증가, 기반시설 부담, 사회적 형평 훼손, 부동산 가격상승, 개발 특혜 등의 부정적 외부효과에 더 초점을 맞춤.
  - 이에 따라 사전협상제, 기부채납, 임대주택 공급, 각종 부담금 등 다양한 공공기여 제도가 운영됨.
  - 반면 민간은 공공의 전반적 틀을 제시하는 구조에서 단순히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대한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동인을 주로 가지게 됨.
- 하지만 이제는 도심 개발을 통해 과거와 같이 손쉽게 개발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며, 향후 개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공공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수요에 부합하는 도시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개발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공공성을 기존의 기부채납, 부담금 등에 국한하지 않고 거주성 향상, 삶의 질 향상, 생활 인프라 확충, 일자리 공급, 도시 혁신 등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장하는 시각 전환이 필요함.
- 공공성에 대한 시각 전환은 사업 자체의 공공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업성을 개선하여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개선의 핵심 명분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서울시 대책이 사업성 개선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떠나서 밀도와 공공기여를 유연하게 활용하여 사업성을 제고하는 방향성은 매우 의미 있다고 판단됨.
  - 향후에도 도심개발의 공공성과 사업성의 적절한 균형점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것임.

이승우(연구위원 · swoolee@cerik.re.kr)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 3년, 향후 개선과제 산적

- 현장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한 시점 -

### ■ 기능등급제 시행 3년, 기능등급증명서 발급 건수는 2023년 말 기준 2.5%에 그쳐

- 2021년 5월 27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기반으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이하, 기능등급제)’가 시행됨.
  -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종별 기능등급(초급·중급·고급·특급)을 구분·관리하는 종합 경력관리 체계임.
  - 본 제도는 등급 상승에 따른 처우개선 체계를 마련하여 직업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신규인력의 진입 촉진 및 숙련인력 확보를 통한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제도 도입 3년이 지난 현재, 기능등급제는 실효성 저하로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실제로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퇴직공제 신고 된 기능등급 보유 근로자 1,042,738명<sup>3)</sup>의 기능등급증명서 발급 건수는 25,951건으로 약 2.5%에 그치고 있음.

<표 1> 기능등급증명서 발급 건수

(단위 : 건,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계(비율)	기능등급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계	25,951(100.0)	2,998	7,843	9,358	5,752
방문	10,363(39.9)	1,075	2,773	4,032	2,483
인터넷	15,558(60.1)	1,923	5,070	5,326	3,269

자료 : 건설근로자공제회.

### ■ 제도 운영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 산적, 보완 방안 마련 필요

- 제도 운영 3년이 지난 현재, 기능등급제 운영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은 크게 다음과 같음.
  - 먼저, 기능등급 부여를 위한 경력산정 기준임.
  - 현재 기능등급은 현장 경력, 자격증, 교육·훈련, 포상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음. 이때, 자격증,

3) 2023년 1~12월까지 퇴직공제 신고 피공제자(1,584,246명) 중 외국인, 보통인부를 제외한 수치임.

교육·훈련, 포상은 각각의 기준에 따라 근로일수로 환산 후 현장 경력과 합산되어 총 환산 경력연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함.

- 이때, 총 환산 경력연수 기준으로 초급은 3년 미만, 중급은 3년 이상 9년 미만, 고급은 9년 이상 21년 미만, 특급은 21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등급 산정을 위한 다양한 지표가 존재하지만 건설근로자의 특성상 현장 경력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음. 그러나 현장 경력 산정 시 <표 2>에서와 같이 직종마다 1년을 산정하는 환산일수가 다른 상황임. 전체 직종별 연평균 신고일수도 약 71일로 1년 중 작업 가능일수 184일과 비교해 보아도 상당히 적은 실정임.<sup>4)</sup>

<표 2> 현재 직종별 등급 구분 일수 예시

(단위 : 일수)

직종	연평균 신고일수	등급			
		초급 (3년 미만)	중급 (3년 이상 9년 미만)	고급 (9년 이상 21년 미만)	특급 (21년 이상)
토공	58.98	176.94 미만	176.94 이상 530.82 미만	530.82 이상 1238.58 미만	1238.58 이상
형틀목공	89.53	268.59 미만	268.59 이상 805.77 미만	805.77 이상 1880.13 이상	1880.13 이상

자료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건설근로자 기능 등급 구분·관리 기준 타당성 검토 용역' 2024년 4월 간담회 자료.

- 둘째, 기능등급 상승 시 숙련도 평가의 부재로 수요자가 원하는 역량을 가졌는지에 대한 검증이 부재함. '일을 오래 했다가 일을 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기능등급제가 설정한 기준에 따른 등급이 인정되기 위해서 등급만큼의 숙련도 보유가 필요함.
  - 일례로 호주는 수준별 직무 역량을 산업별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취득하기 위해 숙련도 및 지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셋째, 기능등급제 연계 승급교육의 제도적 부재임. 건설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상 장기간의 지속적인 교육·훈련은 어려움. 이에 체계적(진입-성숙-관리/전수)이고 지속가능한 건설근로자의 교육훈련 과정이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기능등급제와 연계된 교육·훈련 체계 마련이 필요함.
  - 현재 국토교통부는 2회(2023년 6개 직종, 2024년 12개 직종)에 걸쳐 기능등급제 연계 필수교육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음. 2023년의 경우 6개 직종 시범사업의 참여 인원은 634명(수료 620명, 수료율 97.8%)<sup>5)</sup>으로 저조한 성과를 보임.
- 마지막으로, 제도 시행 3년이 되었지만 기능등급을 부여받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활용 방안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태임. 활용 방안의 부재는 결과적으로 공급자인 건설근로자

4)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건설근로자 기능 등급 구분·관리 기준 타당성 검토 용역' 2024년 4월 간담회 자료.

5) 2024년의 경우 현재 시범사업 실시 중에 있어 정확한 참여 인원수 파악을 할 수 없음.

에게는 ‘왜 등급을 부여받아야 하는가?’, 수요자인 사업주에게는 ‘등급을 부여받은 인력을 왜 고용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임.

## ■ 기능등급제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이루어져야

- 향후 기능등급제가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임.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에서는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이를 위해 향후 고려되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현재 직종별 경력산정 방식에 대해 현실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둘째, 기존 제도권(소규모 현장, 퇴직공제·고용보험 신고 누락(상용 등)) 내 근로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능인력의 현장 경력 인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셋째,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건설기능인력의 역량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sup>6)</sup> 기능등급제 숙련도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실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넷째, 교육의 선순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등급제 연계 승급교육의 제도화 및 운영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다섯째, 건설현장 내 합법 외국인의 기능등급 부여 및 관리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기능등급제의 제도적 활용 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앞서 언급한 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되더라도 제도적 활용 방안이 부재하다면 산업 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기능등급제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할 것임.
- 건설현장의 인력 고령화에 따른 인력 수급문제는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온 사안임. 기능등급제의 안정적 정착은 현재 건설현장 내 청년층 및 숙련인력 부족, 불법외국인 문제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제도 시행 3년이 된 현재,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위해 노·사·정 모두 머리를 맞댈 때임.

최은정(연구위원 · kciel21@cerik.re.kr)

6)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 타당성 검토 용역(2024. 4월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9개소 사업주 설문 결과, 고급 이상부터 차별적 역량이 필요하고 등급에 대한 적절한 실력 인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왔다고 보고함.



## 건설산업 사회공헌사업, 국민과의 교감 확대 필요

- 컨트롤타워 운용 통한 사회공헌활동의 비전과 목표 제시해야 -

### ■ 복지(welfare)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의 조화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

- 복지란,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사회정책 및 시설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사회 복지(社會福祉)를 의미함.
  - 복지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인 ‘welfare’는 ‘만족스러운’을 뜻하는 ‘Well’과 ‘살아간다’라는 의미의 ‘Fare’가 더해진 단어로 ‘만족스럽게 살아간다’로 해석됨.
  - 사회복지(社會福祉, social welfare)란 사회 구성원의 일정한 생활 수준 및 보건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정책 및 제도의 조직적인 체계임.
    -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에는 노인·신체장애인과 같이 평균적 생활 수준에서 낙오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수한 사회적 보호 방책을 의미함.
    - 그러나,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에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계획적인 사회 서비스 또는 시설의 체계를 말함.
- 우리나라에서의 사회복지에는 헌법에 근거를 둔 만큼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음.
  -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34조 :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기본 이념) :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 ■ 국가만의 책임이 아닌 국민 복지 증대, 여러 기업에서 많은 사회공헌활동 수행

- 국민의 복지 증대를 위해 농·수협 등 많은 기관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함.
  - 농협 : 사회적 가치와 협동조합 가치의 동시 창출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이라는 사회공헌 목표하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수행 중<sup>7)</sup>

-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 지역 문화축제 및 전통문화 보존지원, 농촌체험 활동, 농촌에서 휴가 보내기 캠페인, 농협 스포츠단 운영, 대중문화 지원, 지역 체육·문화행사 지원
- 글로벌 분야 : 다문화가정 모국 방문 지원, 해외 협동조합 지원,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 지역사회 공익 분야 : 소외계층 위문,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농산물 구입, 직거래 장터
- 학술·교육 분야 :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전달, 농업인 자녀 초청 행사, 꿈나무 육성을 위한 행사 지원, 공모전 개최, 농협 장학관 운영
- 환경 분야 :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조성, 영농 폐기물 수거지원, 환경 관련 캠페인, 숲 조성, 환경단체 지원, 환경 정화, 농협 공동방제단 운영 등
- 수협 : 어업인의 보호·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해 교육지원의 활성화 및 어촌사회의 유지 발전,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회공헌활동 수행<sup>8)</sup>
- 미래 인재 육성 분야 : 수협 장학금 지원 및 수협장학관 운영
- 어촌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분야 : 어업인 의료지원, 공기살균기·청정기 지원
- 살고 싶은 어촌 만들기 : 어촌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기 구매 지원, 다문화가정 모국 방문 지원

## ■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수행 중인 건설업계, '사회공헌활동 컨트롤타워' 설립을 통한 국민과의 교감(交感) 확대 필요

-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여러 건설단체에서 국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 중임.
  - 대한건설협회 :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건설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
  - 건설단체총연합회 : 사랑의 집 보수, 취약 계층 생활시설 개보수, 장학사업 등 수행
  - 건설공제조합 : 사랑 나누리 봉사단 활동, 1사 1촌 농촌 봉사, 나눔 계좌 조성 및 운영, 장학사업, 불우이웃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경영을 실천

<표 1> 주요 건설단체의 사회공헌 사업

구분	사업명
대한건설협회	사랑의 쌀 사업 / 사랑의 연탄 나누기 사업 / 불우아동 사랑 나눔 사업 / 일선 장병 위문 방문 / 「건협 사회봉사단」 사업 / 기타 사회공헌사업
건설단체총연합회	건설산업 윤리경영 기반 구축 / 건설산업 공생 발전 기반 구축 / 건설 현장 친환경 펜스 홍보 / 건설산업 안전·친환경캠페인 및 지침(기준) 제작 / 법질서 준수프로그램 운영 / 급여 끝전 기부 약정 / 건설 인재 채용설명회 / 취약 계층 생활시설 개보수 / 건설산업 사회공헌백서 발간 / 공중파 PPL / 다큐멘터리 제작 / 건설 밀그림 제작 및 배포 / 무가지 시리즈 기획 / 라디오 공익광고 / 건설산업(레고)경진대회 / 우수 건설시설물 건설 현장 사진 공모전 및 전시 / 주요 SOC 시설물에서 마라톤대회 등 개최 / SNS 등 개설 및 운영
건설공제조합	사랑 나누리 봉사단 활동 / 1사 1촌 농촌 봉사 / 나눔 계좌 조성 및 운영 / 장학사업 / 불우이웃 지원 등

자료 :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2016),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의 지속적 사회공헌활동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발전방안"에서 발췌.

7) 농협(2022), '범농협 사회공헌보고서'.

8) 수협재단(<http://www.fecwf.or.kr/>).

- 건설업계가 수행 중인 여러 사회공헌활동은 국가의 사회 안전망 보조 구실을 하며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등 국민과의 교감에는 한계를 보임.
  - 대한건설협회·건설단체총연합회·건설공제조합 : 사랑의 쌀·연탄 나누기 사업, 취약 계층 생활시설 개보수, 건설 현장 친환경 펜스 홍보, 1사 1촌 농촌 봉사 등
- 이에, 건설산업 ‘사회공헌활동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의 운용을 통해 건설 사회공헌활동의 비전과 목표를 국민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인구구조의 변화,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등을 이유로 사회 복지사업의 트렌드는 지속해 변화하고 있으므로 ‘건설 사회공헌활동 컨트롤타워’는 다음을 전제로 운용되어야 함.

**<표 2> 건설 사회공헌활동 컨트롤타워 운용의 전제**

구분	사업명
사회 변화	· 인구구조 변화 : 고령화 및 저출산 사회로의 진입 · 가치관의 변화 : 개인의 다양성 존중, 인권 및 사회적 책임 강조 · 사회 경제적 변화 : 빈곤 및 불평등 심화, 취업 시장 변화
사회문제 변화	· 심각해지는 가족 문제 : 핵가족화 및 한부모 가구 증가 · 고령화 사회 진입 / 정신 건강 문제 심화 : 스트레스 증가 및 우울증 증가, 학교 폭력 및 자살 문제 심각화 / 새로운 사회문제 발생 : 사이버 폭력 및 범죄 증가, 외국인 유입 증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 ICT 기술 접근성 향상 및 인공지능의 활용도 증대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접근성 및 효율성 증대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	· 정부의 사회복지 투자 확대
글로벌 트렌드 변화	· 국제 사회복지 기구와의 협력 강화 / 국제 사회복지 규범 도입 / 외국인의 유입 증가
사회복지 전문인력 부족	· 낮은 사회적 대우 및 급여로 인해 사회복지 전문인력 부족 · 사회복지 교육 강화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사회공헌활동의 트렌드 변화	· 사회복지 사업의 추세는 사회와 사회문제의 변화, 기술의 발전과 복지사업에 대한 정책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지속해 변화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에 진출 시에는 복지사업을 둘러싼 여러 변화를 감안하고 트렌드를 고려하여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함께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자료 : 저자 작성.

임기수(연구위원 · kslim@cerik.re.kr)